

[]산업별 연합단체
[]총 연합단체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

신청인	성명(한글)	(한자)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	
노동조합	명칭	전화번호			
	소재지	조합원 수			
	대표자	설립 연월일			
노동조합 업무 전담 경력	기간		소속	전담직위	조합원수
	. . .~ . . .(. 년 . 개월)				
	. . .~ . . .(. 년 . 개월)				
	. . .~ . . .(. 년 . 개월)				
	. . .~ . . .(. 년 . 개월)				
	. . .~ . . .(. 년 . 개월)				
	계		년 . 개월		

「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노동조합 위원장 귀하

제 호

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노동조합 위원장

인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담당 직원 확인사항	1.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.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([]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[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[]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본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"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"이란 노동조합과 직접 관련되는 경력을 말하며, 일반 행정사무 등의 경력은 제외됩니다.
-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.